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 설 안 전 특 별 법 안

검 토 보 고

《 건설사고 예방 및 건설안전 강화 》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02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윤종오의원 대표발의(제221480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4. 검토의견	5
가. 총괄적 검토	5
나. 목적 및 국가 등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제6조)	12
다. 정의(안 제2조)	15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25
마. 정보공개 등(안 제5조)	27
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 일반 원칙(안 제7조)	30
사.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33
아. 설계자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11조)	39
자. 시공사등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44
차.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안 제17조 및 제18조)	52
카.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안 제19조)	56
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안 제20조 및 제21조)	61
파. 안전관리비 및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안 제22조 및 제23조) ..	66

하.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등(안 제24조 및 제25조)	70
거.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안 제26조 및 제27조)	72
너. 건설공사 현장점검(안 제28조)	78
더. 건설공사 등의 부실 추정(안 제29조)	82
러. 건설사고 신고(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85
머. 건설종사자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안 제33조 및 제34조)	90
버. 영업정지(안 제36조)	93
서. 과징금(안 제37조)	97
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안 제41조 및 제42조)	101
저. 벌칙(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106
처. 과태료(안 제46조)	113

I. 윤중오의원 대표발의(제221480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윤중오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

다. 회 부 일 : 2025. 12. 4.

2. 제안이유

최근 5년간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1,200명을 넘고 부상자는 3만 명에 이르는 등, 건설산업이 여전히 가장 위험한 산업 중 하나로 남아 있음. 이는 드러난 숫자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며, 현행 제도로는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제의 제·개정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주체가 복합적으로 얽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산업의 특수성이 기존 법률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건설현장 노동자 등 건설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 단계에서부터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

산정을 의무화하여 무리한 공기 단축과 이른바 ‘속도전’이 안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설계자·시공자·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사전에 확인하며,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함. 아울러 시공자와 하수급자에게도 공정별·단계별 안전의무를 명확히 부과하는 한편, 계약 이후 드러난 현장 여건으로 인해 공기가 불가피하게 늘어날 경우 공사비 조정을 협의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공사비 조정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현장 노동자와 안전 전문가가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안전을 점검·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 등에 따른 포상·지원 및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구조적으로 줄여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발주자가 설계자·시공자·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

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9조).

다.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라. 시공자가 감리자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마. 감리자가 시공시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바.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제도를 신설하며, 그 업무의 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아.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0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36,5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안 제37조).

자. 자율준수제도 평가 결과 등에 따른 포상·지원 및 공공발주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
고자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차.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경우, 발주자
및 설계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

4. 검토의견

가.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구성체계

제정안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및 하수급시공사, 건설종사자 등 각 주체들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건설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총 7개 장, 47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조문 체계 】

건설안전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정보 공개 등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절 일반 원칙	
제7조 기본 의무	
제2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제8조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제9조 안전관리 역량 확인의무 등	
제10조 안전자문사 선임	

건설안전특별법안	
제3절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1조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제4절 시공자등의 안전관리의무	
제12조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3조 안전관리조직	
제14조 안전교육	
제15조 시공자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	
제16조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제5절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7조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8조 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제6절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9조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3장 안전관리 활동	
제20조 안전관리계획 등	
제21조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22조 안전관리비	
제23조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제24조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제25조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4장 현장점검 및 건설사고 신고·조사	
제26조 명예건설현장감독관	
제27조 명예건설현장감독관의 권한	
제28조 건설공사 현장점검	
제29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30조 건설사고 신고	
제31조 건설사고 조사 등	
제32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5장 건설종사자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제33조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가입 의무	
제34조 보험·공제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제6장 보칙	
제35조 시정명령 등	
제36조 영업정지	
제37조 과징금	

건설안전특별법안	
제38조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3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 청문	
제41조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의 확산	
제42조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7장 벌칙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벌칙	
제46조 양벌규정	
제47조 과태료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소규모안전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행정제재처분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 제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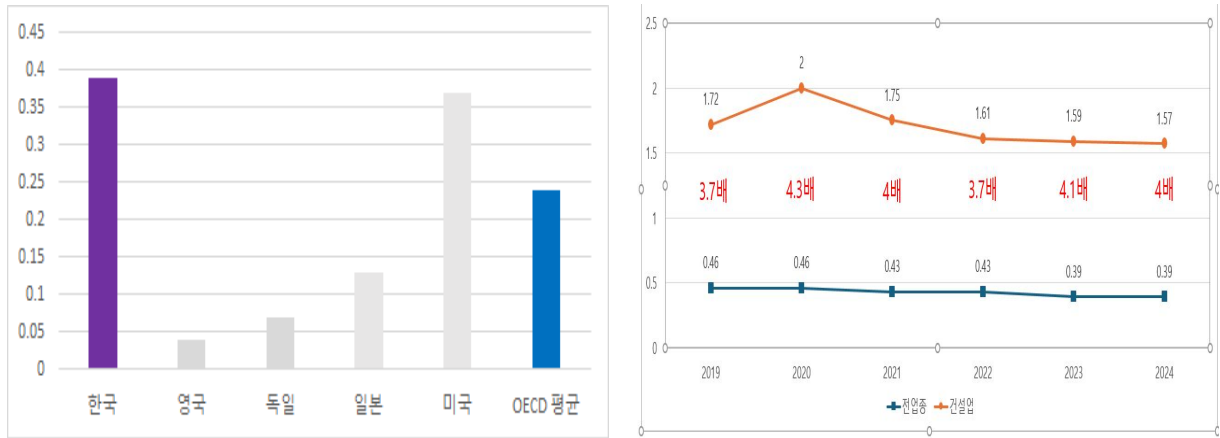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2023년도 사고사망만인율¹⁾은 0.39‰로 OECD 주요국가 평균인 0.24‰에 비하여 높고, 영국(0.04‰), 독일(0.07‰), 일본(0.13‰)의 사고사망만인율과 비교하면 3.0~9.8배에 해당하는 수준임.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2023년 1.59‰)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 평균

1) 사고사망만인율(‰) = 상시 근로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2023년 0.39‰) 대비 약 4배에 해당하여, 다른 산업에 비해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산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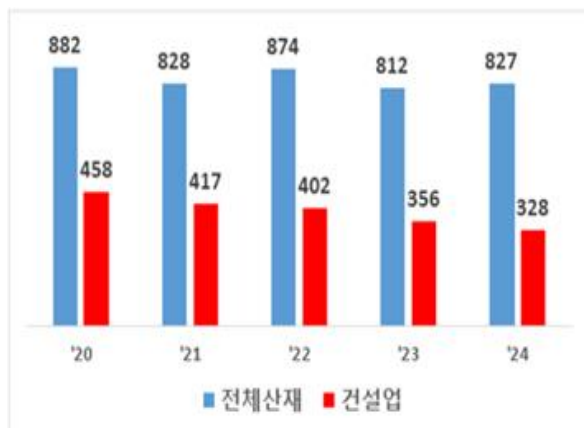
【 OECD 주요국가 사고사망만인율('23년) 】 【 국내 사고사망만인율(전체산업, 건설업) 】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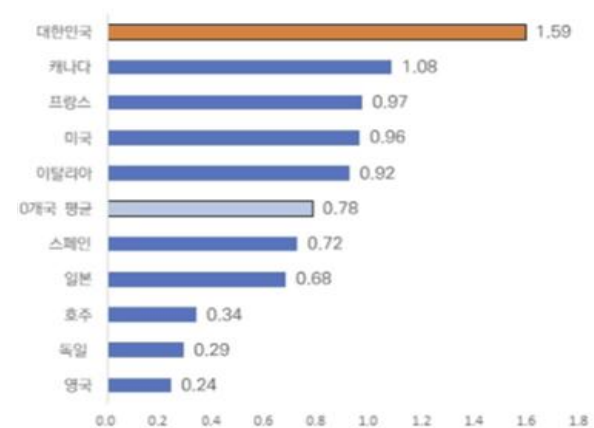
2020년 이후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감소하고 있고 2024년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28명(7.9%, 356 → 328명) 감소한 328명으로 확인되나, 전체 산업 사망자 수의 39.7%에 해당하고,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2023년 1.59‰) 또한 타 국가들(2023년 기준, 영국 0.24‰, 독일 0.29‰, 호주 0.3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연도별 산재사고 사망자 】



※자료: 국토교통부

【 '23년 국가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



이와 관련하여, 발주자는 건설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업주체이나 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왔는바 발주자의 권한에 맞는 안전관리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고, 국내 건설사업의 안전관리 의무와 책임이 시공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사업 참여주체별로 역할 및 책임을 분담하여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²⁾

제정안은 발주자, 안전자문사, 설계자, 시공사, 하수급시공사, 감리자, 건설종사자 등 각 건설공사 참여자³⁾들이 각각 이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의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게 하며,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기술 수준 향상을 통한 관련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⁴⁾에 규정되어 있는 건설현장 안전

2) 최수영, “건설사고 저감, 발주자 중심의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해야: 영국 CDM제도, 시공 이전단계부터 안전보건 책임과 역할 분배”, 대한건설진흥회, 국토와교통 제36권 제12호 통권425호, 2019. pp.67-69, 최수영, “CDM 제도로 본 영국 건설사업의 협력적 안전관리체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정책저널 통권 제41호, 2021. pp.37-38. 참고

3)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발주자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 나. 설계자, 감리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다. 시공사·하수급시공사(이하 “시공사등”이라 한다)
 - 라. 건설종사자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제정안으로 이관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명예건설현장 안전감독관 제도 및 자율적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한 건설안전 자율준수 평가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사항들을 건설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각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건설사고의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인지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건설공사에 있어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설주체별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책무를 부여하고 건설사고를 감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의견 검토 결과와 현장 적용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절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안전특별법안」⁵⁾에 대하여,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경영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과 중복·경합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과잉 규제 및 중복 처벌 우려가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는 건설업의 매출액 영업이익율이 약 3%인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며, 근로자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건설 안전은 「건설안전특별법」을 적용하도록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5)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총 3건이 발의되어 있음.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제정안(문진석의원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151호, 2025.6.27. / 의안번호 제2213160호, 2025.9.22.)은 기상정되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동 검토보고는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의안번호 제2214802호, 2025.12.3.)에 대한 것으로, 관련 단체의 의견은 3건의 「건설안전특별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사항을 종합하여 기재함.

나. 목적 및 국가 등의 책무 등(안 제1조·제4조·제6조)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및 하수급시공사, 건설종사자 등 각 주체들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건설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사업계획의 승인, 건설공사 인·허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 전 단계에 걸쳐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건설공사 참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협조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 규정임. 제정안은 제명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서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 건설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건설종사자의 안전과 생명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과 기존에 발의된 2건의 「건설안전특별법안」은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 및 기존 발의 「건설안전특별법안」의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발의 「건설안전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11151호, 2025.6.27. / 의안번호 제2213160호, 2025.9.22.)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주체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안전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안 제4조는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건설공사 참여자가 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관할 지역에서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승인, 건설공사

인·허가,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등 전 단계에 걸쳐 적절한 조치 등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실시하는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건설안전’이라는 제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건설공사 참여자가 각각 ‘건설사고의 예방’과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서로 협조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⁶⁾

6) 유사 입법례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사업주 등 및 근로자의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 정의(안 제2조)

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설계도서(設計圖書)”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도면,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工事示方書), 내역서, 예정 공정표 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부대도면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관련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발주자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나. 설계자, 감리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시공자·하수급시공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 라. 건설종사자 5. “발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정 안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따른 발주자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자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발주자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주자
-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 7. “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업을 경영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업자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
- 8.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9. “시공자”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축주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 라.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
 - 마.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사업자
 -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공하는 소방시설업자
 -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급인
 - 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 10. “총괄시공자(수급인)”란 2명 이상의 수급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 발주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수급인을 말한다.
- 11. “하수급시공자”이란 시공자로(하수급시공자)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재하도급)받고 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 정 안

12. “**도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급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급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2에 따른 도급 중 원도급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급 중 국가유산수리 약정계약
13. “**하도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도급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도급을 받은 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하도급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하도급.
14. “**건설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6. “**설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설기술 중 설계와 설계에 수반되는 계획·조사·측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나. 「건축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설계자
 - 다. 「주택법」 제33조에 따라 설계하는 자
 - 라.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설계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감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다.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라. 「주택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
 - 마.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전기·소방·정보통신 등 감리 또는 공사감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 정 안

18. “감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말한다.
19.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20.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기술자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21. “건설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건설공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나. 임대,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목의 건설공사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시공사등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안전시설물”이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2.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항 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안 제2조는 건설공사, 설계도서, 건설사고, 건설공사 참여자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안 제2조제1호는 ‘건설공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⁷⁾

7)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에 따른 건설공사로 정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⁸⁾와 달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포함하고 있음.

이는 「건설안전특별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전체 건설공사로 확대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안 제2조제5호·제7호·제9호·제12호·제13호·제20호⁹⁾

-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9) 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발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4호의 따른 발주자

는 각각 발주자, 건설사업자, 시공사, 도급, 하도급,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

-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발주자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발주자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주자
 - 7. **“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업을 경영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업자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을 영위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
 - 9. **“시공사”**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접 시공하는 건축주
 -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 라.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
 - 마.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사업자
 -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공하는 소방시설업자
 - 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급인
 - 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 12. **“도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급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도급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2에 따른 도급 중 원도급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급 중 국가유산수리 약정계약
 - 13. **“하도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도급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도급을 받은 자가 소방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하도급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하도급
 - 20. **“건설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
 -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 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방기술자
 -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이는 안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시공자, 도급, 하도급, 건설기술인이라는 용어의 사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그 적용 범위를 전체 건설공사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한편, 제정안 제2조제6호·제14호·제15호·제18호·제19호¹⁰⁾는 각각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감리,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의 조항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용어에서는 「전기공사업법」 등과 관련된 개념이 제외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 안 제2조제4호¹¹⁾는 ‘건설공사 참여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건설공사 참여자에는 ①발주자 및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10) 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5.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8. “감리”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말한다.
19.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11) 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발주자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 나. 설계자, 감리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다. 시공자·하수급시공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
 - 라. 건설종사자

②설계자, 감리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③시공자·하수급시공자, ④건설 종사자가 해당됨.

이는 제정안이 건설공사의 발주, 설계, 시공, 감리에 참여하는 건설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또는 각 주체별로 준수하여야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공통 준수 사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건설주체 모두를 함께 지칭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어로 생각됨.

다만, 건설공사 참여자 중 ‘②설계자, 감리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설계자’와 ‘감리자’는 그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주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호로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¹²⁾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¹³⁾는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될 수 있는 사업자에

12) 제정안은 제2장의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에 설계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의무에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제2장제3절)와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제2장제5절)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

1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해당하는 개념임을 고려할 때 건설공사 참여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다음, 안 제2조제10호¹⁴⁾는 2명 이상의 수급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 발주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수급인을 ‘총괄시공자(수급인)’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정안에서는 공동도급계약 또는 총괄시공자(수급인)이라는 용어의 사용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⁵⁾

다음, 안 제2조제21호¹⁶⁾는 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¹⁷⁾에 따른 근로자 중 건설공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②임대, 용역, 위탁 등

14) 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총괄시공자(수급인)”란 2명 이상의 수급자가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 발주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수급인을 말한다.

15) 제정안은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2개 이상의 업체에게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 ‘총괄설계자’와 ‘총괄수급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8조(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⑥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2개 이상의 업체에게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각각 총괄설계자와 총괄수급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자에게는 총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6) 제정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 “건설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건설공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나. 임대,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가목의 건설공사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시공자등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7)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①의 건설공사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시공사등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건설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음.¹⁸⁾

이와 관련하여, 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건설공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¹⁹⁾에서 ‘건설근로자’를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근로자’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8) 유사 입법례로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항만운송 종사자’에 관한 정의 규정이 있음.

「항만안전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항만운송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에서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2조(항만운송 종사자의 범위) 「항만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항운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19)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건설공사의 안전관리</u> (이하 “안전관리”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u>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u>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안 제3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3조 본문은 제정안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기존의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건설공사의 참여자 등에게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므로, 제정법(「건설안전특별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3조 단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76조²⁰⁾에 근거하여 이미 「산업안전보건법」²¹⁾이 특별법의 지위에서 관리 중이므로, 「산업안전

20) 「근로기준법」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정법 (「건설안전특별법」)의 우선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21)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마. 정보공개 등(안 제5조)

제 정 안
제5조(정보 공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 결과 2. 제29조에 따른 부실벌점 3. 제30조에 따른 건설사고 신고 결과 4. 제31조제5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5. 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가입 현황 6. 그 밖에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자·시공사등·감리자(이하 “설계자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표를 개발하거나,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 및 정보망 구축·운영을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공개방법,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5조는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자·시공사·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4항부터 제17항까지²²⁾의 내용을 제정안으로 이관하면서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정안 제25조제1항 및 제29조제3항²³⁾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그 밖에 공개를 통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안 제5조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설계자·시공자등²⁴⁾·감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거나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및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2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⑰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제정안

제25조(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추정) ③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실별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부실별점을 종합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24) 시공자등: 시공자·하수급시공자(제정안 제2조제4호다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3항은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안전관리 수준 평가와 관련된 사항’의 추가 규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²⁵⁾

25) 참고로,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대해서는 제정안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

제25조(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 일반 원칙(안 제7조)

제 정 안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절 일반 원칙 제7조(기본 의무) ① 건설공사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건설사고 예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험성을 최대한 제거하고, 위험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위험성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대처한다. 3. 모든 작업에서 안전을 우선하여 고려한다. 4. 안전시설물 설치 등 공동의 작업 환경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위험에 관한 정보를 해당 위험 관계자에게 제공한다. 6. 건설현장과 그 주변은 사고발생 원인 제거를 위해 청결하게 관리한다. ② 건설공사 참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안 제2장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6개 절, 13개 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등, 감리자, 건설종사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각각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의무를 각 절에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각 건설공사 참여자들이 건설사고의 예방을 위한 법적 의무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벌과 과징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제2장) 구성 체계】

구 분	절 제목	조 구성
제1절	일반 원칙	제7조 기본 의무
제2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제8조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제9조 안전관리 역량 확인의무 등 제10조 안전자문사 선임
제3절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1조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제4절	시공사등의 안전관리의무	제12조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3조 안전관리조직 제14조 안전교육 제15조 시공자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 제16조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제5절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7조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8조 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제6절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9조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안 제7조는 건설공사 참여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건설사고 예방 원칙’을 6개의 기본 의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안 제1항), 건설공사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안 제2항).

안 제7조제2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제1항²⁶⁾에서 발주청

소속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건설공사 참여자²⁷⁾ 전체에 확대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

건설공사 참여자가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그 권한을 침해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가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그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²⁸⁾이 규정되어 있음.

26)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배제 등) ①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27)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발주자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시공사·하수급시공사(이하 “시공사등”이라 한다)

라. 건설종사자

28) 제정안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자

사.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 정 안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2절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제8조(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관련한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에 대해 시공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심의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 3. 안전자문사의 검토의견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을 검토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설계자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심의 또는 검토의견을 받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2개 이상의 업체에게 분리하여 발주할 경우 각각 총괄설계자와 총괄수급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자에게는 총괄관

제 정 안

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안전관리 역량 확인의무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시공자·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③ 발주자가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맡기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가 감리자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자문사 선임)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안전자문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의 건설기술인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한 자
2. 「건축사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자
3. 그 밖에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나 경력을 보유한 자

②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는 경우 안전자문사로부터 자문 받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서명하고, 서명한 내용의 확인서를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에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안전자문사는 발주자가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1.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
2.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발주자의 의무나 역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공사 종류나 규모별 안전자문사 선임기준, 안전자문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발주자의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임.

먼저, 안 제8조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등²⁹⁾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제공하도록 하고(안 제1항),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³⁰⁾, 기술자문위원회³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심의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지역건축안전센터³²⁾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29) 제정안

제5조(정보 공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자·시공자·감리자(이하 “설계자등”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

30)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①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32)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확인·검토·심사 및 점검

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4. 삭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시·도

2.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구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동안의 연평균 건축허가 면적을 말한다)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구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는(안 제2항) 등의 내용임.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은 건설안전의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바,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의 전 과정에 있어 그 비용 및 기간을 제공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산정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춘 기구의 심의 또는 검토를 통한 그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다음, 안 제9조는 발주자에게 설계자·시공사·감리자와 해당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하고(안 제1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것을 시공사에게 지시하도록 하며(안 제2항),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맡기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가 감리자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는(안 제3항) 내용임.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³³⁾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³⁴⁾는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33)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34)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함)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의2³⁵⁾는 발주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이 ‘공사’의 적정 기간과 적정 비용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제정안은 발주자로 하여금 설계자·시공사·감리자(설계자등)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도록 하여, 적정 기간 및 비용 보장을 ‘공사’ 외에 설계 및 감리까지 확대하고,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또는 검토의견을 받는 절차와 설계자·시공사·감리자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의 확인 및 발주자의 감리자 책무 수행을 규정함으로써, 발주자에게 ‘공사’에 한정하지 않고 설계·시공·감리의 전 단계에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35)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 안 제10조는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안전자문사”라 함)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항), 안전자문사에게는 발주자에 대하여 안전관리의무 등 준수를 조언하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3항), 발주자가 안전자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안전자문사로부터 자문받은 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을 서명한 내용의 확인서를 건설공사 착공 전에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안 제2항) 하고 있음.

이는 발주자에 의해 선임된 안전자문사가 발주자의 법적 안전 책무에 대한 자문을 통해 발주자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안전자문사의 자문 외에도 발주자가 자문받은 사항을 인지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유사 입법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³⁶⁾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음.

3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아. 설계자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11조)

제 정 안
제3절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1조(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및 제63조를 준수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설계자는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안 제11조는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항은 설계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제63조(안전관리비용)³⁷⁾를 준수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37)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

공사비용을 산정하도록 하되, 설계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함)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항은 설계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가설구조물과 관련하여 건설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들을 살펴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제12항³⁸⁾은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함)에게 확인받도록 하고 있고,³⁹⁾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8)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9) 제정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제12항을 제정안 제24조로 이관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⁴⁰⁾는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등의 가설구조물에 대하여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이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동 규정들은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설계에 부적합한 측면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통해

제정안

제24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① 시공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에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 관계전문가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타설(打設)된 콘크리트가 일정 강도에 이르기까지 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재(部材)]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위험 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시공 단계’ 이전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건설종사자의 안전 및 건설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가설구조물 및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가설구조물 및 안전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한 설계가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제정안은 설계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제63조(안전관리비용)⁴¹⁾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의 해당 조항은 설계자가 아닌 발주자의 의무에 해당하고, 제정안 부칙⁴²⁾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를 삭제하도록 하고

41)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2) 제정안 부칙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54조,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 및 제 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있으므로, 해당 조항에서 설계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이 법 또는 그 하위법령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자. 시공사등의 안전관리 의무(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 정 안
제4절 시공사등의 안전관리의무 제12조(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2.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관리 적정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자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시공자는 제1항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시공자와 공사비용 조정 협상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제8조제2항의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도급계약 체결 이후 위험요인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④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하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위험요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건설종사자가 제4조제3항에 따른 의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반복적으로 지키지 않아 건설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정상적인 작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건설종사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서면 시정 요구서에는 조치사항 위반 내용과 정상적인 작업 수행이 어려운 사유, 시정조치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야 한다.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종사자가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공자는 해당 건설종사자와 근로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

제 정 안

에게 해당 건설종사자를 작업에서 임시 배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임시 배제시 건설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조직)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
4. 시공자, 하수급시공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5. 시공자가 직접시공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자 위원 또는 현장 건설노동자들의 위임을 받은 자
6.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는 하수급업체별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또는 현장 건설노동자들의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안전교육)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공자는 건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법, 시공순서, 작업내용, 안전규칙,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들어갈 필수적인 내용,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시공자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수 공종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 현장이 복수의 시공자로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해당 범위를 담당하는 시공자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모든 시공자

③ 시공자는 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자등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제 정 안

- ④ 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시공자등이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시공자는 건설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假設)·굴착(掘鑿)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리자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의 안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하수급시공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공자의 안전시설물 직접 설치 의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하수급시공자는 시공자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급시공자에게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시공자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하기에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③ 하수급시공자는 제2항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로 시공자는 하수급시공자로 본다.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시공자등⁴³⁾의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각각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안 제12조), 안전관리조직(안 제13조), 안전교육(안 제14조), 시공자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안 제15조)를, 안 제16조는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12조는 시공자에게 착공 전에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고(안 제1항),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

⁴³⁾ 시공자등: 시공자·하수급시공자(제정안 제2조제4호다목)

비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항), 감리자에게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관리 적정성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2항),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⁴⁴⁾ 하도급을 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의 위험요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안 제4항),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안 제5항)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공자의 착공 전 안전성 검토 의무 및 발주자에 대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요청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시공상의 안전과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감리자의 안전관리 적정성 승인 후 시공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하도급시공자 선정을 통해 시공 과정에서 안전 저해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또한, 안 제12조제5항은 안 제9조제2항⁴⁵⁾에서 발주자로 하여금 시공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연계하여 이를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에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4)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체결을 하기 전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에 부지기 전

45) 제정안

제9조(안전관리 역량 확인의무 등) ② 발주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다음, 안 제13조는 안전관리계획⁴⁶⁾을 수립하는 시공자에게 ①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 책임자’, ②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 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 담당자’, ④시공사, 하수급시공사 등 ‘협의체의 구성원’, ⑤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24조⁴⁷⁾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현장 건설노동자들의 위임을 받은 자’, ⑥시공자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수급업체별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 또는 ‘현장 건설노동자들의 위임을 받은 자’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고 있음.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⁴⁸⁾에 규정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을 제정안으로 이관하면서, 안전관리조직의 구성원에 근로자위원,

46) 제정안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① 시공자는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7)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48)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수급업체별 근로자 대표, 현장 건설노동자들의 위임을 받은 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전관리조직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 및 하수급시공자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음, 안 제14조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공자에게 건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법, 시공순서, 작업내용, 안전규칙,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요소 등을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⁴⁹⁾를 제정안으로 이관하면서 안전교육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임.

다음, 안 제15조는 시공자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공자에게 다수 공종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도록 하고(안 제1항), 건설공사 현장이 복수의 시공자로 구성된 경우에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공자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2항), 둘 이상의 시공자 등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조정하도록 하고(안 제3항), 건설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假設)·굴착(掘鑿) 등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로

49)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터 공사 현장의 안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도록 (안 제5항)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시공단계의 안전을 위해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며, 동시 작업 시 작업 방해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등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저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다음, 안 제16조는 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하수급시공자에게 시공자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안 제1항),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하기에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한지 검토하도록 하며(안 제2항),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항).

이는 하수급시공자가 시공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외에, 하수급시공자에게도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시공상 안전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하는 의무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⁵⁰⁾에 따라 시공자에게 확보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하수급시공자에까지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50) 제정안

제12조(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2.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③ 시공자는 제1항의 검토 결과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공사비용 인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자는 시공자와 공사비용 조정 협상을 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제8조제2항의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도급계약 체결 이후 위험요인 등이 발견되었을 경우

차.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안 제17조 및 제18조)

제 정 안
제5절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7조(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의 검토 결과 건설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변경을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고, 해당 내용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2. 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하는지 여부 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4항 각 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⑥ 감리자가 제5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경우 시공자는 그 명령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라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감리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감리자의 조치를 이유로 해당 감리자의 교체, 업무 배제, 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조치에 따라 발주자나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7조는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안 제18조는 감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

먼저, 안 제17조는 감리자에게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⁵¹⁾를 검토 하도록 하고(안 제1항), 설계도서 검토 결과 건설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변경을 발주자 또는 시공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항), 공사 착공 전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내용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도록 하고(안 제3항), 시공자의 설계도서에 따른 가설시설물·안전시설물 등 시공 여부와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며(안 제4항), 그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 다) 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안 제5항)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⁵²⁾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51)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설계도서(設計圖書)”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 가. 도면,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工事示方書), 내역서, 예정 공정표
- 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부제도면
-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관련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2)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공사감독자에게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 포함)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인바, 제정안은 이를 안 제17조에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공사 외에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안전관리 및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한편, 안 제17조제4항은 제1호에서는 감리자로 하여금 가설시설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2호에서는 ‘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가 설계도서⁵³⁾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제1호 및 제2호를 하나의 조문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음으로, 안 제18조는 안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에 따른 감리자의 조치를 이유로 해당 감리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안 제1항), 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 제17조제5항부터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따라 발주자나 시공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자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안 제2항),

이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⁵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정안에 규정하면서 조문의 표현을 일부 조정한 것임.

53)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설계도서(設計圖書)”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도면,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工事示方書), 내역서, 예정 공정표

나.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부제도면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관련 서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54)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의3(면책)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은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카.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안 제19조)

제 정 안
제6절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제19조(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건설종사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는 등 건설종사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건설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주취상태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건을 섭취·흡입한 상태 3. 의사의 처방전 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자는 건설종사자를 작업현장에서 일시 배제할 수 있다. 단, 일시 배제시 시공자는 건설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 발주자, 제13조제1항5호 및 제6호에 따른 근로자위원이나 근로자대표(위임을 받은 자 포함)가 협의하여 건설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규칙을 수립한 경우 그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 제19조는 건설종사자의 안전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종사자에게 안 제14조⁵⁵⁾에 따른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는 등 건설종사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안 제1항), 건설종사자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주취상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55) 제정안

제14조(안전교육)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시공자는 건설종사자를 대상으로 공법, 시공순서, 작업내용, 안전규칙, 건설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들어갈 필수적인 내용,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및 제4호⁵⁶⁾에 해당하는 물건을 섭취·흡입한 상태, 의사의 처방전 없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⁵⁷⁾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

5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쉰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 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칼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용한 경우에는 작업을 금지하며(안 제2항), 건설공사자가 작업금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작업현장에서 일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3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안 제1조⁵⁸⁾에서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밝히고 있고, 건설안전을 위해서는 건설공사 참여자⁵⁹⁾ 전체의 안전관리 노력이 필요한바,

건설공사 참여자에 해당하는 건설종사자⁶⁰⁾에 대해서도 안전교육 이수, 음주 또는 마약류⁶¹⁾ 사용 상태에서의 작업금지 등 건설사고 예방을

58)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 및 하수급시공사, 건설종사자 등 각 주체들이 이행하여야 할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건설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9)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발주자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자
 -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다. 시공사·하수급시공사(이하 “시공사등”이라 한다)
 - 라. 건설종사자

60)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발주자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자
 - 나. 설계자, 감리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다. 시공사·하수급시공사(이하 “시공사등”이라 한다)
 - 라. 건설종사자

6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명시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⁶²⁾

다만, 작업금지 요건 중 ‘의사의 처방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와 관련하여 의사의 처방전 유무보다는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여부 또는 사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작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건설기계관리법」⁶³⁾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건설기계조종 금지요건 중 ‘마약 등 약물’ 투여와 관련하여 금지약물에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외에 환각물질⁶⁴⁾을 포함하고 있고, 음주나 마약 등 약물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62) 유사 입법례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근로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63)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하 “건설기계조종사”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아니 된다.

1.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
2.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 ③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금지 약물의 종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4)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투여 외에 ‘과로 또는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건설기계조종을 금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홍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안 제20조 및 제21조)

제 정 안
제20조(안전관리계획 등) ① 시공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또는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점검을 한 기관은 그 결과를 시공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 및 그 검토 결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공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⑨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제출·승인의 방법·절차와 안전 점검의 시기·방법, 대가(代價) 및 안전점검 기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제21조(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시공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0조는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공자에게 제1종 시설물⁶⁵⁾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이를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함)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1항),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또는 감리자는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며(안 제2항),

6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다.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라.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바.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사.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시공자는 승인을 받은 안전관리계획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안 제3항),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도록(안 제4항)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⁶⁶⁾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시공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66)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⑪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로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제출 대상에 감리자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있음.

다음, 안 제21조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시공자에게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안 제1항),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항).

이는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2⁶⁷⁾의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으로 이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건설

67)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시공사'로 수정하고 있음.

파. 안전관리비 및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안 제22조 및 제23조)

제 정 안
제22조(안전관리비) ①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되, 이를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관리비의 항목 및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① 건설공사 참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이하 “스마트 안전관리”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보조·지원의 대상·절차, 관리 및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 제22조는 안전관리비에 관한 사항으로, 발주자로 하여금 시공자에게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함)을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되, 이를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⁶⁸⁾를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발주자에게 안전관리비를 감액하여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발주자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음, 안 제23조는 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공사 참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사고 예방을 위하여 무선 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이하 “스마트 안전관리”라 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요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2항), 그 밖에 보조·지원에 따른 관리·감독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을 규정하고 있음.

68)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⁶⁹⁾을 제정안으로 이관하면서, 건설공사 참여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스마트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임.

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참여자⁷⁰⁾에는 발주자 및 안전자문사, 설계자, 감리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시공자·하수급시공자, 건설종사자가 해당되는바, 건설공사 참여자 중 누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69)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지원이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건설사고 예방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조·지원의 대상·절차, 관리 및 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0) 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 참여자”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발주자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선임하는 안전자문사

나. 설계자, 감리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다. 시공자·하수급시공자(이하 “시공자등”이라 한다)

라. 건설종사자

보이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와 달리 ‘지원을 받는 자’가 비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하.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등(안 제24조 및 제25조)

제 정 안
제24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① 시공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에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 관계전문가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안전관리 수준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4조는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시공자로 하여금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계전문가⁷¹⁾에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고(안 제1항),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항).

이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1항 및 제12항⁷²⁾을 제정안

71) 제정안

제11조(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72)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시공자’로 하고,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규정을 안 제3항으로 신설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다음, 안 제25조는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4항⁷³⁾을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참여자’⁷⁴⁾를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로 하고,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 규정을 안 제2항으로 신설하여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73)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74)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거.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안 제26조 및 제27조)

제 정 안
제26조(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을 두어야 한다. ②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이하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의 위촉, 해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의 권한) ①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사업장 출입 및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시 작업중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보고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보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상의하여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임시작업중지는 제2항에 의한 조치가 이뤄지거나,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해제 결정에 의해 해제할 수 있다.

안 제26조 및 제27조는 명예건설현장감독관에 관한 사항임.

안 제2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을 두도록 하고(안 제1항),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을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항), 사업주에게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도록 하고 있음(안 제3항).

안 제27조는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의 업무로 ①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②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③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고(안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으로부터 급박한 산업재해 관련 보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상의하여 현장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안 제2항),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의 임시작업중지는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거나 현장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의 해제 결정에 의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항).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⁷⁵⁾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은 1997년⁷⁶⁾부터

75)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근로자 또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 대상 건설공사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해당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분회 등 명칭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해당 노동단체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 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3.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4.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제8호는 제외한다)로 한정하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1.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2.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4.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5.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7.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8.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9. 안전·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10.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와 유사한 명예건설현장감독관 제도를 건설현장에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건설현장에도 운영할 수 있고, 제정안 및 「산업안전보건법」은 명예건설현장감독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에 관하여 그 목적과 수행업무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현장에서 명예건설현장감독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복 여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외에 명예건설현장감독관 제도를 추가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76)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5248호, 1996.12.31. 일부개정, 1997.5.1. 시행)

제61조의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근로자단체·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예방관련전문단체에 소속된 자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방법, 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관련 규정 비교】

제정안(「건설안전특별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안 제26조(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 ○ 국토교통부장관: <u>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u>하기 위하여 <u>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u>을 두어야 함. ○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이하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음. ○ 사업주: <u>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u>에 대하여 <u>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u>. ○ 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의 위촉, 해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령으로 정함.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고용노동부장관: <u>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u>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u>명예산업안전감독관</u>을 위촉할 수 있음. ○ 사업주: <u>명예산업안전감독관</u>에 대하여 <u>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u>.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안 제27조(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의 권한) ○ <u>명예건설현장안전감독관의 업무</u>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사업장에서 하는 <u>자체점검 참여</u>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u>사업장 감독 참여</u> 2. 사업장 <u>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u> 및 사업장에서 하는 <u>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u>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u>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u> 4. <u>사업장 출입 및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시 작업중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보고</u> 5. <u>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u>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u>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u>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등) ○ <u>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u>는 다음 각 호와 같음. (후단 생략) 1. 사업장에서 하는 <u>자체점검 참여</u>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u>사업장 감독 참여</u> 2. 사업장 <u>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u> 및 사업장에서 하는 <u>기계·기구 자체검사 참석</u> 3.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u>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u> 4. <u>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u> 5. <u>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여</u> 6.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u>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u>

제정안(「건설안전특별법안」)	「산업안전보건법」
7. 근로자에 대한 <u>안전수칙 준수 지도</u> 8. <u>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u> 9. <u>안전·보건 의식</u> 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u>참여와 지원</u> 10. 그 밖에 <u>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u> <u>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u> 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7. 근로자에 대한 <u>안전수칙 준수 지도</u> 8. <u>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u> 9. <u>안전·보건 의식</u> 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 등에 대한 <u>참여와 지원</u> 10. 그 밖에 <u>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u> <u>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u> 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너. 건설공사 현장점검(안 제28조)

제 정 안

제28조(건설공사 현장점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자등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7조 및 제29조에서 같다) 및 인허가기관의 장
4.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에게는 제1항의 시정명령 등의 조치 권한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한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 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나 요청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점검 결과 건설종사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 정 안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기, 대상, 방법 등 점검계획을 공유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안 제28조는 건설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자등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⁷⁷⁾를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과 비교하여 ‘점검

77)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체’와 ‘점검 결과 건설종사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조치’에 차이가 있음.

먼저, 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점검 주체’에 시·도지사,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안전관리원을 추가하고 있음. 이는 건설현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하안전관리 등에 있어 안전을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추가함으로써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음, 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 건설종사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⁷⁸⁾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78) 「산업안전보건법」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와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건설종사자와 관련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더.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안 제29조)

제 정 안
제29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품질·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별점을 주어야 한다. 1. 제2조제9호에 따른 시공자 2. 제2조제11호에 따른 하수급시공자 3.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4.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부실별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부실별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실별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부실별점을 종합 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부실별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29조는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시공자, 하수급시공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⁷⁹⁾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을 주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⁸⁰⁾를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79) 「건설기술 진흥법」

제47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0)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엔지니어링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③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공사 부실 측정 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하고,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로 수정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있음.

러. 건설사고 신고(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 정 안
제30조(건설사고 신고) ① 시공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시공자가 신고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피해자 인적 사항 3. 사고발생 경위 4. 조치사항 5. 향후 조치계획 제31조(건설사고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는 자(이하 “조사자”라 한다)는 다른 조사자가 조사한 결과의 제공을 해당 조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에 규정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건설사업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4.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을 위반하여 하도급참여 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5. 건설사업자 또는 건축주가 아닌 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설계도서가 미흡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발주자 또는 시공자(수급인은 제외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시공자등과 건설사고 재발

제 정 안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공사 중지를 명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자는 제4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한 자는 재발방지대책이 건설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공사 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공사비용 인상은 발주자와 설계자등이 과실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여야 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기, 대상, 방법 등 조사계획을 공유하고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8조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는 건설사고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임.

안 제30조는 시공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안 제1항),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시공자가 신고한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피해자 인적 사항, 사고발생 경위, 조치 사항, 향후 조치계획을 정보망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2항).

이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⁸¹⁾의 내용을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다음, 안 제31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항), 건설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하여

81)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⁸²⁾를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비하여 사고조사의 주체에 ‘시·도지사’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추가하고, 사고조사의 대상을 중대건설현장사고에서 건설사고로 확대하며, 건설사고가 재발 우려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과 공사중지로 인하여 인상된 공사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다음, 안 제32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사고”라 함)가 발생

82)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에 대한 통보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③ 법 제6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하나의 건설사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원인으로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나의 건설사고로 본다.

1.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顛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하여 건설사고의 원인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항),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중대건설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권고·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 또는 건의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안 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⁸³⁾를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사고조사 후 조사결과 공개를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있음.

83)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 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며. 건설종사자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안 제33조 및 제34조)

제 정 안
제33조(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가입 의무)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중 소속 건설종사자가 업무상 재해(사망 또는 부상)를 입은 경우에 재해자(재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건설종사자 재해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공제”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인 건설사업자는 하수급시공자가 가입한 보험·공제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하수급시공자 소속 건설종사자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보험·공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범위의 손해에 대하여 보장하고, 건설사업자의 건설사고 이력 및 보장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산정되어야 한다. ③ 발주자와 시공자인 건설사업자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와 하수급시공자의 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2분의 1을 시공자에게 지급하고, 시공자는 하수급시공자의 보험료의 2분의 1을 하수급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건설사업자의 등록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관에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매년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험·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기관, 가입절차, 보장범위, 보험료 산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보험·공제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33조 및 제34조는 건설종사자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에 관한 사항임.

안 제33조는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중 소속 건설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을 하는 재해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공제”라 함)에 가입하도록 하고, 발주자와 시공사인 건설사업자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하도록 하며, 발주자는 시공자와 하수급시공자의 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2분의 1을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시공자는 하수급시공자의 보험료의 2분의 1을 하수급시공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안 제34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착공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모든 공사 현장에서 가입하고 있지만 근로자 재해 보험·공제 가입은 선택사항이므로 미가입하거나 보상한도가 부족한 실정으로,⁸⁴⁾

제정안은 모든 건설사업자가 건설종사자 재해 보험·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하수급시공사 소속 건설종사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84) 예를 들어, 사망 시 1인당 한도 2억원, 1사고당 한도 2억원 상품에 가입했으나 단일 사고에서 4명의 사망자 발생시 1인당 최대 5천만원 보상(이천 화재사고)

하수급시공자가 가입한 보험·공제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그 피해를 추가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종사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설종사자 재해보험 비교】

구 분	산업재해보상보험	건설종사자 재해보험(공제)
운영기관	근로복지공단	공제조합, 손해보험사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보험성격	의무 보험	임의 보험
담보내용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금액 * 근로자 책임과실 非고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금액을 초과 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액 * 건설종사자 책임과실(비율) 감안
보상내용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등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 소송비용 등
보상한도 (사망기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최대 2.9억원 보장	재해근로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65세까지 상실수익금을 차등 보장

※자료: 국토교통부

버. 영업정지(안 제36조)

제 정 안
제36조(영업정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또는 제17조제1항, 제3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영업정지를 받은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축사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하도급인 경우는 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 30일이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의 경우는 계속할 수 있다.

안 제36조는 건설사업자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건축사가 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건축사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는 구조물 파손(또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 위반)과 동시에 사상자 발생 시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망사고에도 구조물 미파손 시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구조물 파손과 동시에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중대 재해를 유발하여 고용노동부의 영업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처분하는 등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 처분요건이 상이한 상황임.

【 현행 영업정지 등 처분 현황 】

근거법		대 상	요 건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5호, 제84조 (시행령 제80조제1항)	건설사업자	· 고의·과실, 부실시공 + 시설물 중대 손괴 + 공중위험 발생	12개월
	제82조제2항 제5호, 제84조 (시행령 제80조제1항)		· 고의·과실 + 부실시공 + 시설물 중대 손괴 + 5명 이상 사망	12개월
	제82조제2항 제5호, 제84조 (시행령 제80조제1항)		· 고의·과실 + 부실시공	8개월

근거법		대 상	요 건	영업정지	
			+ 시설물 중대 손괴 또는 인명피해		
			• 고의·과실 + 부실시공 + 구조안전 지장 또는 내용 기간 단축	6개월	
			• 고의·과실 + 주요 공공시설 파손 + 공중 피해	4개월	
			• 고의·과실 + 설계기준 미달 시공 또는 불량자재 사용	2개월	
	제82조제1항 제7호 제84조 (시행령 제80조제1항)		• 산안법의 중대재해 유발 + 고용부 영업정지 요청 + 10명 이상 사망	5개월	
			• 6~9명 사망	4개월	
			• 2~5명 사망	3개월	
건축법	제25조의2	설계·시공·감리 자 및 전문 기술자	• 법령 위반 + 주요 구조부 중대 손괴 + 사망	6개월(최초위반) 12개월(2년 내 반복)	
건축사법	제11조제1항 제6호	건축사	• 법령 위반 + 부실시공 + 주요 구조부 중대 손괴 + 사상 발생	자격 취소	
	제28조제1항 제4호		• 구조안전 규정 위반 + 사상 발생	효력상실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제1항 제8호, 제32조 (시행령 제48조)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고의·과실 + 주요 구조부 붕괴 + 사람 위해	12개월	
			• 고의·과실 + 구조안전 중대결함	6개월 12개월(1년 내 반복)	
			• 고의·과실 + 인근 주요 시설물 영향	3~12개월	
			• 타당성 조사시 고의 + 수요예측 30% 잘못 + 발주청 재산상 손해	12개월	
			• 타당성 조사시 중대한 과실 + 수요예측 30% 잘못 + 발주청 재산상 손해	6개월	
			• 사전조사 소홀 + 소용비용 증가 + 공사기간 지연 + 발주청 재산상 손해	3개월	

※자료: 국토교통부

제정안은 구조물 파손과 무관하게 설계자·시공자·감리자가 각각의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동일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설계자·시공자·감리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관리의무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서. 과징금(안 제37조)

제 정 안
제37조(과징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000원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36,5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안 제37조는 안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000억원(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업종·분야 매출액에 36,5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있음.

현재 건설업 관련 과징금의 입법례로 「산업안전보건법」⁸⁵⁾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⁸⁶⁾은 상한액을 명시하는 외에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정안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차별화된 과징금 부과 체계를 도입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상한을 대폭 상향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사망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단체⁸⁷⁾들은 현재 건설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85) 「산업안전보건법」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4항(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26조제5항 및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6)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82조(영업정지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87)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약 3%인 상황에서 제정안에 따른 과징금이 과도하여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과징금의 상한액의 하향 조정, 업종별 산업규모에 따른 과징금 상한액의 차등, 해당 공사의 도급금액 또는 영업이익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건설업 영업이익률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균
영업이익률 (%)	종합건설	4.67	4.88	4.06	3.14	3.15	3.98
	전문건설	4.27	4.07	3.43	3.59	3.79	3.83

※자료: 국토교통부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입법례 】

구 분	위반내용	영업 정지	과징금 관련 내용			
			부과기준	상한액		
				비율	금액	
건설기술 진흥법	발주청 재산상 손해, 인명피해, 부실공사 등	1년	위반행위별 차등	-	2억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등	6개월	위반행위별 차등	-	6천만원	
건설산업기본법	하자가 3회이상 발생한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등	6개월	-	-	1억원	
	부실공사, 하도급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1년	공사 도급금액	30%	부실공사 5억원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점검 거짓 실시·부실 등	6개월	위반행위별 차등	-	1억원	
건축법	구조검토·용도제한·자재기준 위반 등	1년	위반행위별 차등	-	10억원	
관세법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6개월	해당 특허보세 구역 운영에 따른 매출액	3%	-	

구 분	위반내용	영업 정지	과징금 관련 내용		
			부과기준	상한액	
				비율	금액
산업안전보건법	승인 필요한 작업(안전·보건유해) 미승인 등	6개월	일매출액×기간	-	10억원
소방시설공사법	설계·시공·감리 의무위반으로 피해 등	6개월	일매출액×기간	-	2억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인가·신고한 때,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등	6개월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매출액	3%	-
전기공사법	전기공사 시공기준 위반 등	6개월	위반행위별 차등	-	1천만원
자동차관리법	결함 은폐·축소 거짓 등 위반 안전기준 미충족하나 판매	6개월	종합검사 관련 종합검사대행자	-	1천만원
				-	5천만원
게임산업법	게임제공업 등록기준 미충족 등	6개월	일매출액×기간	차등	10억원
건강기능식품법	유독·유해물질 포함된 식품판매 등	6개월	일매출액×기간	차등	10억원
공중위생관리법	영업 미신고, 관련기준 미준수 등	6개월	일매출액×기간	차등	1억원
판로지원법	중소기업 경쟁입찰 거짓 입찰 등	-	위반 매출액	30%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리기준 미준수 등	6개월	사업 매출액 (직전 3개 연도의 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연평균 매출액)	5%	-
화학물질관리법	취급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등	6개월	사업장 매출액	5%	-
인터넷방송법	1년내 사업 미개시, 1년이상 휴업 등	1년	사업 매출액	3%	-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물품 판매 등	-	위반 매출액	2%	-
국가계약법	입찰 참가자격 제한임에도 계약 등	-	위반 매출액	10%, 30%	-
하도급법	하도급 대금지급 2회이상 체납 등	-	하도급액	2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정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등	1년	위반 매출액	-	위반 매출액

※자료: 국토교통부

어.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안 제41조 및 제42조)

제 정 안
제41조(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의 확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도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설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건설안전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안전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의 공공기관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입찰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의 포상·지원 및 가산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안전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제 정 안
3.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4.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5.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안 제41조 및 제42조는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한 건설안전 자율준수제도,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 등에 관한 사항임.

안 제41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건설안전과 관련된 법률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건설안전 자율준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라 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의 신청 및 비용 부담,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 등에 근거한 포상, 지원, 공공공사 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2조는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기관 지정을 통한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 수행과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⁸⁸⁾(이하 “「공정거래법」”)을

이라 함)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등과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은 2023년⁸⁹⁾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는바,

제정안은 건설 분야에도 이와 유사한 건설안전 자율준수 및 자율준수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8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 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8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0호, 2003.6.20. 일부개정, 2023.12.21. 시행)

【 제정안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율준수 제도 비교 】

제정안(「건설안전특별법안」)	「공정거래법」
안 제41조(자율적 안전관리 문화의 확산) ○ 국토교통부장관: 건설현장의 안전을 도모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u>자율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u>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안전과 관련된 <u>법률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u>(이하 “<u>건설안전 자율준수제도</u>”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u>평가</u>(이하 “<u>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u>”라 한다)를 할 수 있음. ○ 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u>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u>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u>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u>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u>하게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u>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u>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u>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포상 또는 지원 등을</u> 할 수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의 공공기관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u>입찰시 가산점</u>을 줄 수 있음.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u>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u>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u>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u>(이하 “<u>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u>”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u>평가</u>(이하 “<u>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u>”라 한다)를 할 수 있음. ○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u>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u>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u>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u>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u>하게 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u>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u>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u>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u> 할 수 있음.
안 제42조(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 국토교통부장관: <u>건설안전 관련 분야에</u> 대하여 <u>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u>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기관</u>(이하 “<u>평가기관</u>”이라 한다)으로 <u>지정</u>하여 <u>건설안전 자율준수평가에</u> 관한 업무(이하 “<u>평가업무</u>”라 한다)를 <u>수행</u>하게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 공정거래위원회: <u>공정거래 관련 분야에</u> 대하여 <u>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u>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u>(이하 “<u>평가기관</u>”이라 한다)으로 <u>지정</u>하여 <u>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u> 관한 업무(이하 “<u>평가업무</u>”라 한다)를 <u>수행</u>하게 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제정안(「건설안전특별법안」)	「공정거래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4.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5.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저. 벌칙(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 정 안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발주자 3.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설계자(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토가 완료되기 전 설계자의 업무에 한정한다) 4.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하거나 제17조제6항을 위반한 시공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하수급시공자 6. 제17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7항을 위반한 감리자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공자 2.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시공자 2. 제20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시공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을 설치한 시공자 4. 제24조제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한 시공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제29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거부·방

제 정 안
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31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는 벌칙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3조는 건설공사 참여자가 이 법에 따른 주요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벌칙(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4조 및 제45조는 그 외의 안전관리의무 위반과 건설공사 참여자에 해당하지 않는 가설구조물 관련 관계전문가⁹⁰⁾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징역: 1년 이하, 2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을 규정하고 있음.

벌칙 규정 중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된 안 제43조는 다른 건설공사

90) 제정안

제11조(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및 제63조를 준수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① 시공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관계전문가에게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의 종류, 관계전문가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간섭 또는 권한을 침해하거나,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이 주요 안전관리의무⁹¹⁾를 준수하지 않아

91) 제정안

제8조(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한 업무 수행 등) ① 발주자는 설계자등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보건대장에 포함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관련한 검토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설계자가 산정한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에 대해 시공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1.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심의
2.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가, 허가, 승인, 신고 수리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검토의견

제11조(설계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설계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건설종사자가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사고 예방에 필요한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등을 고려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 및 제63조를 준수하여 예정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설계자는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설계도서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시공하기에 적합한지를 착공 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2. 가설구조물과 안전시설물

②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안전관리 적정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자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시공자의 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의무) ① 시공자는 다수 공종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 현장이 복수의 시공자로 구성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가 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 해당 범위를 담당하는 시공자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모든 시공자

③ 시공자는 같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둘 이상의 시공자등이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작업이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④ 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시공자등이 이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건설사고 위험이 높은 가설(假設)·굴착(掘鑿)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감리자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현장의 안정성에 관한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⁹²⁾에서 사업주가

제16조(하수급시공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하수급시공자는 시공자가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수급시공자에게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감리자의 안전관리의무) ① 감리자는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공사 착공 전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제출 받고, 해당 내용의 안전관리 적정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 안전시설물 등을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2. 시방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하는지 여부

⑤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4항 각 호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시공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또는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⑥ 감리자가 제5항에 따라 공사중지를 명한 경우 시공자는 그 명령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감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에 이의가 있는 시공자는 즉시 그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9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이며,

유사 입법례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과 주요 처벌요건은 다음과 같음.

【 건설안전 관련 처벌 규정 】

구 분	근거	처벌	주요 위반내용	
			처벌대상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85①	무기·3년이상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기술인	의무위반으로 시설물 중대한 손괴가 발생,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
	§85②	10년·1억원이하		의무위반으로 시설물 중대한 손괴가 발생,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
	§86①	10년·1억원이하		업무상 과실로 시설물 중대한 손괴가 발생,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
	§86②	5년·5천만원이하		업무상 과실로 시설물 중대한 손괴가 발생,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
	§87의2	2년·1억원이하	건설사업자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한 자
	§88	2년·2천만원이하	엔지니어링 사업자 건설기술인	설계도서 작성시 구조검토 미이행한 자 고의로 건설사업업무를 게을리하여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 초래한 자
			건설사업자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미제출, 미이행한 자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구 분	근거	처벌	주요 위반내용	
			처벌대상	위반내용
	§89	1년·1천만원이하	건설사업자	안전점검 미 실시한 자
				관계전문가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한 자
				부실측정, 현장점검, 사조위 조사 거부·방해한 자
				안전관리계획 승인없이 착공한 자
건설산업 기본법	§93②	무기·3년이상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인	안전법령 위반하여 시설물 중대한 손괴가 발생,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
	§93①	10년이하		안전법령 위반하여 시설물 중대한 손괴가 발생,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94②	10년·1억원이하		업무상 과실로 시설물 중대한 손괴가 발생,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자
	§94①	5년·5천만원이하		업무상 과실로 시설물 중대한 손괴가 발생,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97	1년·1천만원이하	건설사업자	표시, 광고의 제한을 위반한 자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건설사업관리 실적, 인력 보유현황, 재무상태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관리법	§51②	무기·1년이상	관리자	건축물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중대한 파손 발생,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건축물 사용제한·금지, 해체 등 긴급조치 미이행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건축물 해체허가 받지 않고 해체하다가,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해체계획서를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51①	10년·1억원이하	감리자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
			관리·감리자	§51② 사유와 동일하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2	1년·1천만원이하	관리자	건축물 유지·관리의무를 위반한 자

구 분	근거	처벌	주요 위반내용	
			처벌대상	위반내용
				감리자 시정·공사중지 요청을 받고 미이행한 자
건축법	§106②	무기·3년이상	설계·시공·공사감리자 등	설계·시공·공사감리 등 의무 위반하여 중대한 손괴 발생,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106①	10년이하		설계·시공·공사감리 등 의무 위반하여 중대한 손괴 발생,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자
	§107②	10년·10억원이하		업무상 과실로 건축물의 중대한 손괴 발생,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107①	5년·5억원이하		업무상 과실로 건축물의 중대한 손괴 발생,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자
	§110	2년·1억원이하		구조검토 실시, 용도제한 등을 위반한 자
주택법	§98②	무기·3년이상	설계·시공·감리자 등	설계·시공·공사감리 등 의무 위반하여 중대한 하자 발생,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98①	10년이하		설계·시공·공사감리 등 의무 위반하여 중대한 손괴 발생,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자
	§99②	10년·1억원이하		업무상 과실로 건축물의 중대한 손괴 발생,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99①	5년·5천만원이하		업무상 과실로 건축물의 중대한 손괴 발생,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자
	§101	3년·3천만원이하	설계·시공자	고의로 주택의 설계·시공기준을 위반한 자
	§102	2년·2천만원이하	설계·시공자 감리자	과실로 주택의 설계·시공기준을 위반한 자 감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입주자에 손해를 입힌 자
산업안전보건법	§167①	7년·1억원이하	사업주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한 자
	§168	5년·5천만원이하		안전조치를 위반한 자
			§172	5백만원이하

※자료: 국토교통부

처. 과태료(안 제46조)

제 정 안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토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자 등에게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발주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발주자 3. 제20조제6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시공자 4.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정·지불하지 아니한 발주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항목과 다르게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시공자 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지 아니한 시공자 7.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종사자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9.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착공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발주자 2.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의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점검자 4.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 사실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46조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벌칙이 부과되는 안전관리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건설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⁹³⁾

그 밖에 시공자의 준공 후 안점점검 종합보고서 제출, 발주자의 안전관리비 산정·지불 등에 대하여 법에 따른 건설안전을 위한 의무 이행 확보 수단으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및 요건 등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93) 제정안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건설공사 참여자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자
2.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발주자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토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4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등에게 적절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발주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발주자

【 안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

구분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과태료 상한
제46조 제1항	제1호	-발주자: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적성성을 검토받지 않은 경우 -발주자: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의 적성성을 검토 받은 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제2호	-발주자: 설계자·시공자·감리자와 계약 체결 전 안전관리 역량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제3호	-시공자: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4호	-발주청: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경우	
	제5호	-발주자: 시공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비의 항목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제6호	-시공자: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을 설치 전에 관계전문가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지 않은 경우	
	제7호	-발주청, 인허가기관, 시공자, 설계자 및 감리자 :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제8호	-건설사업자: 건설중사자재해 보험·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제2항	제9호	-발주자: 시공자와 하수급시공자의 보험료를 더한 금액의 2분의 1을 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 하수급시공자의 보험료의 2분의 1을 하수급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제1호	-발주자: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 또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기 전에 착공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제2호	-발주청: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구분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과태료 상한
	제3호	-시·도지사,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국토안전관리원 : 건설공사 현장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를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4호	-시공사 및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제5호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건설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후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유사 입법례로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과 부과요건은 다음과 같음.

【관계 법령상 건설안전 의무 관련 과태료 규정 현황】

구 분	근거	과태료		주요 위반내용	
		부과금액	부과주체	부과대상	위반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91②	1천만원 이하	국토부 시·도지사	건설 사업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발주청	시공의 적정성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

구 분	근거	과태료		주요 위반내용	
		부과금액	부과주체	부과대상	위반내용
				발주자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자
	§91③	3백만원 이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사용자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엔지니어링을 수주한 자

구 분	근거	과태료		주요 위반내용	
		부과금액	부과주체	부과대상	위반내용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발주청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건설사업자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발주자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자
				건설공사 참여자	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자
건설산업 기본법	§99	5백만원 이하	국토부	건설사업자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자

구 분	근거	과태료		주요 위반내용	
		부과금액	부과주체	부과대상	위반내용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하도급 승낙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추가·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자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발주자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수급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자

구 분	근거	과태료		주요 위반내용	
		부과금액	부과주체	부과대상	위반내용
건축물 관리법	§54②	1천만원 이하	국토부 지자체	건축물 관리자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정기점검, 긴급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긴급한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4③	5천만원 이하	국토부 지자체	건축물안 전점검기 관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점검자
					허가권자
					해체공사 감리자
	§54③	5천만원 이하	국토부 지자체	건축물안 전점검기 관	해체관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자
	§54③	5천만원 이하	국토부 지자체	건축물안 전점검기 관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구 분	근거	과태료		주요 위반내용	
		부과금액	부과주체	부과대상	위반내용
				관리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건축법	§113①	2백만원 이하	국토부 지자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시공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조업자, 유통업자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건축물 건축자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
		1백만원 이하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해도 허가권자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업무 대행자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관리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협조하지 아니한 자
주택법	§106	2천만원 이하	국토부 지자체	사업주체	사전방문을 실시하게 하지 아니한 자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임대사업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구 분	근거	과태료		주요 위반내용	
		부과금액	부과주체	부과대상	위반내용
		5백만원 이하		토지 임대인	임대료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토지를 임대한 자
				주택조합 발기인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주요 사항을 변 경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 지 아니한 자
				사업주체	주택의 성능검사 결과 또는 조치 결과 를 입주예정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거짓 으로 알린 자
					주택 하자가 발생했을 때 보수공사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
					하자 보수 조치 결과를 입주예정자 및 사용감사권자에게 알리지 않은 자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보고 또는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 명령 을 이행하지 않은 자
				감리자	시공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감 리 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 업무 수행 중 사업주체에게 거짓으 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자
					부적합한 시공을 발견했음에도 사업주체 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감리보고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지 않거 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구 분	근거	과태료		주요 위반내용	
		부과금액	부과주체	부과대상	위반내용
				주택을 공급받은 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
					주택 공급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산업안전 보건법	§175	5천만원 이하	고용부	소유자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3천만원 이하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등록한 사 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하거나 석 면 비산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 고 해체·제거한 자
				도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공사의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5백만원 이하		사업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사업주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 시키지 아니한 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휴 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도급인	수급인 근로자를 위한 위생시설 설 치 장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도급 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 하지 아니한 자
				관계자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 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 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구 분	근거	과태료		주요 위반내용		
		부과금액	부과주체	부과대상	위반내용	
		1천만원 이하		도급인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사업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다양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자 (유해·위험 방지 조치, 안전검사, 안전인증, 근로자 보호조치 등)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등 감독기관의 명령을 위반한 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5백만원 이하		사업주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 선임 및 업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법령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감독기관의 명령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구 분	근거	과태료		주요 위반내용	
		부과금액	부과주체	부과대상	위반내용
					작업환경측정 시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근로자대표가 요구했음에도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에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감독기관의 보고 또는 출석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화학물질 제조업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내용이 거짓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 명칭 등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비공개 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 보호 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구 분	근거	과태료		주요 위반내용	
		부과금액	부과주체	부과대상	위반내용
		3백만원 이하		사업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제정·변경 사항을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할 때 자격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에게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화학물질 용기 등에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작업환경측정 결과, 건강진단 결과 등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법령에서 정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석면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근로감독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답변을 거부한 자
					근로감독관의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지도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 발주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구 분	근거	과태료		주요 위반내용	
		부과금액	부과주체	부과대상	위반내용
				도급인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 조치 관련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소유자	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석면조사 기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완료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자료: 국토교통부

문 의 처
02)6788-5591